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참고자료

보도

2017. 3. 27.(월) 조간

배포

2017. 3. 24.(금)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3145-7460), 문형진 팀장(3145-7466)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④①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마흔 한 번째 금융꿀팁으로,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④①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행복해 지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 진입 중 경미한 범퍼 접촉사고를 냈. 차를 빨리 빼달라는 뒷 차량의 경적 소리가 거셌지만, 사고를 처음 겪는 A씨는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몹시 당황스런 상황을 겪음 ■ (사례2) B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더니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게 되었음 ■ (사례3) C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함 ■ (사례4) D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하였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님 ■ (사례5) E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로 3천만원이 들었으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낀

☞ 갑작스런 교통사고 발생 시 아래 6가지 노하우를 활용하세요.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 ①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 ② “교통사고 신속처리협의서” 활용, 사고내용 기록
- ③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 ④加害者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 ⑥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

꿀 팁

①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사례1)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 (사례1)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합니다.

* 찾아가기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 안내 - 교통사고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③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사례2)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 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합니다.

▣ 사고차량을 10km 이내 견인 시

- ▶ 보험회사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 : **무료**
- ▶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한 경우 : **51,600원(2.5톤미만, 승용차 기준)***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고시 운임·요금표(2012.1.2.) 기준(일반견인 요금은 사고차량의 톤급·이동거리 등에 따라 상이)

** 찾아가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후 과대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사례3)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사례4)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보상 가지급금 예시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병원치료비(입원료 포함) 1천만원, 상해등급 4급(자배법 기준), 휴업손해 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병원치료비 1천만원(전액), 위자료 64만원(128만원*50%), 휴업손해 5백만원(1천만원*50%) =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수령 가능**

⑥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 (사례5)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 : 사망 최고 1.5억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 장애 최고 1.5억원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한도 2억원)을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8천만원, 휴업손해 2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 ▶ 우선 **정부**가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부상에 대해 3천만원 보상**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가입된 보험회사가 나머지 **7천만원 보상**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